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일부개정 확정 공고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이용수칙 게시 : 진남수영장 안내데스크 및 홈페이지
- 개정 이용수칙 효력 발생일 : 2022. 2. 21.(월)
- 제출의견 : 없음
- 주요내용

- 이용수칙 제12조(개인사물함) : 신설

<p>제 12조(개인사물함)</p> <p>① 회원은 수영장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 및 신청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거 신청을 허가할 때 공단은 보증금(10,000원)을 예치시킨다.</p> <p>③ 이용기간은 보증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p> <p>④ 회원이 개인사물함을 파손할 경우 보수비용은 회원본인이 부담하며, 내용물 분실 시 공단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p> <p>⑤ 회원은 제3항에 의거 이용이 종료될 경우 별지2호를 작성 및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p> <p>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p>

- 이용수칙 제11조(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 : 수정

기존(~에서)	변경(~으로)
<p>제 11조(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p> <p>6.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p>	<p>제 11조(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p> <p>6. 수영장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p>

- 신청자 접수 : 수영장 정상운영 시 별도 공지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진남수영장 관리사무실(061-652-82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1부. 끝.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제1장 회원 및 강습

제1조(목적)

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진남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 ① 진남수영장(이하 “수영장”)의 회원 구분은 강습 회원(일반강습반, 어린이반, 실버반), 월권 자유수영,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 강습 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강습반(초급·중급·고급반) :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 마스터 강습반 :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서 자유형·배영·평영·접영 등 네 가지 영법(200m 완주 가능자)이 모두 구사 가능하여 수영강사의 테스트를 합격한 자
 3. 어린이반 :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4. 실버반 :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
 5. 자유수영반 : 대상 및 강습 기간 제한 없음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조(온라인 강습신청)

- ① 온라인 강습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온라인 강습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2개 강습반까지 신청가능하다.
- ③ 온라인 강습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다.
- ④ 온라인 강습신청을 완료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 추후 수영장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다. 단, 강습중인 회원은 강습신청이 불가하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강습반은 강습 중에도 대기 가능하다. 단, 마스터반 강습중일 때는 제외한다.

제4조(회원등록)

-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며,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미 등록 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 ③ 강습당첨자는 회원등록을 마쳐야 하며,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이용료 결제 및 이용수칙 서약서를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상시 가능하다. 단, 락커 상황에 따라 즉시이용이 아닌,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
- ⑤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분실 시 즉시 수영장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한다.(재발급 수수료 2,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제5조(강습)

- 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
- ② 반별 강습시간(자유수영포함)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50분 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 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④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도중 강습반 및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 ⑥ 모집정원 미달 시 강습효과 증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강습반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 ①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할 수 있다.

제2장 반환 및 변경

제7조(이용료 반환)

- 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
 2.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
 3. 제 1항 제 2호 및 3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 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 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 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등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 ④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운영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 ⑤ 강습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10퍼센트) 없이 일할 계산한다.
- ⑥ 2개월이상 결제한 경우 강습 잔여일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한다.

제8조(회원기간 연기)

- ①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7일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할 경우
 2. 그 밖에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
- ②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 ①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00부터 20:2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30까지이다.
- ②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수영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 시
 -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는 수영장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 3. 여성회원으로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
- 4.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 5.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 6.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 7.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가족, 선생님, 인솔자)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8.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 9.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

10.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11.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 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품,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4. 직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5. 화장실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염색약을 바른 경우
 6. 심신질환, 전염성질병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수영장 안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
 2.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
 3. 본인 강습반이 아닌,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초급오전반 → 초급저녁반, 자유수영 → 초급새벽반 등등)
 4.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할 경우
 5. 타인에게 특정 영법, 수모,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
 6. 공단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
 7.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
 8.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제12조(개인사물함)

- ① 회원은 수영장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 및 신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거 신청을 허가할 때 공단은 보증금(10,000원)을 예치시킨다.
- ③ 이용기간은 보증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④ 회원이 개인사물함을 파손할 경우 보수비용은 회원본인이 부담하며, 내용물 분실 시 공단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 ⑤ 회원은 제3항에 의거 이용이 종료될 경우 별지2호를 작성 및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 ① 수영장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 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
- ③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 10,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 ④ 수영장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 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제14조(분실물)

락커룸, 샤워실 등 수영장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고지)

수영장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 수영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② 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이용수칙은 2022. 2. 21.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별지1] 진남수영장 개인사물함 신청서

[별지2] 진남수영장 개인사물함 환불신청서

[별지3] 진남수영장 개인사물함 관리대장

